「2025년 (예비)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2025년 (예비)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02. 24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□ (추진목적)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(예비)
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장 등*을 위하여 도약기 지원사업 추진
 - *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및 자립 기반 강화,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, 혁신적인 비즈 니스모델 확산, 판로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, 임팩트 투자 및 사회적 금융 연계 등
- □ (추진기간) 협약체결일 ~ 2025년 10월 31일(금)
- □ (추진내용) 최근 3년 내 SVI 탁월 및 우수를 받은 (예비)사회적기 업 대상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워*
 - * 제외대상) [©]공고일 기준 중앙부처,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개발비 관련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, [©]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, [©]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협약 해지된 기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기업
- □ (추진규모) 통합센터별 14개소 내외,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
 -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4천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
 - 사업비 지원금액의 20% 자부담(부가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부담), 총사업비는 지원신청액(80%)와 자부담액(20%)으로 구성

2. 세부사업

□ (추진내용)

구분	지원내
연구개발(R&D)	· 위탁연구개발,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, IP권리화 지원 등
생산	· 제조설비, 제품생산, 시장테스트, 국내외 인증, 디자인 개선, 브랜딩 개발 등
판로	· 온·오프라인몰 입점, 전시회 참가, 해외 시장조사 등

- □ (추진방법) 1차 교부는 협약체결 후 지급금액의 70% 이내 선금 교부, 2차 교부는 결과보고 및 총사업비 정산 후 남은 잔금 교부
- □ (추진절차) 세부 일정은 진흥원 및 통합센터별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, 선정발표는 통합센터별 유선 통보

① 지원사업 모집공고		② 지원사업 신청접수	③ 서류검토
02월24일(월)		02월24일(월)~03월14일(금)	03월17일(월)~03월19일(수)
	-		▼
⑥ 사업수행		⑤ 협약체결/1차 사업비	④ 대면심사/결과발표
04월 초~10월31일(금)		03월31일(월)~04월30일(수)	03월19일(수)~03월28일(금)
V	-		
⑦ 중간점검		⑧ 최종보고 및 정산	⑨ 성과공유회
06월 중순		~10월31일(금)	11월 말

□ (사업비 지원항목) 명시된 지원 항목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,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항목 추가 가능

	구분	내용
	연구개발(R&D)	· 외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위탁하는 기술개발 비용 · 시험/분석/검사/인증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비용 · 제품 및 서비스 IP 권리화 비용(특허, 상표출원 등)
지원 항목	생산	 생산 공정 내 필요한 신규 기기 도입 및 기술개발 향상 비용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비용 신제품 시장테스트를 위한 전문가 및 패널 구축 비용 등 경영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인증(ISO, HACCP 등) 비용 기존 상품 디자인 개선 및 신규 상품 디자인 개발 비용 기업의 CI, BI 및 브랜딩을 위한 개발 비용(앱개발 비용)
	판로	·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비용(1회성 행사 지양) · 제품 및 서비스 홍보, 현장 판매를 위한 전시회 등 참가 비용 · 해외 시장조사 및 박람회 참가 비용 등
불가 항목	· 참여기업의 인건비,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비용 · 사업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	

- I C - 기 O - 기 O

불가 항목 ·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, 보험료, 기부금, 대출이자, 각종세금(부가세 등)

-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계좌이체 수수료는 인정

·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

※ 주의사항

- ① '연구개발(R&D)' 및 '생산'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필요
- 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성 물품구매비 편성은 가능하나, 자부담 범위 내 집행 가능
- ③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%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
- ④ 지원항목 중 '판로' 부분은 총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

□ (우수기업) 향후 참여기업 중 센터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^①임팩트 투자 연계 지원, ^②기업이 외부 투자(VC, 크라우드펀딩 등)를 유치하면 사업화 비용 추가 지원(500만원 이내), ^③제품 홍보 지원

3.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 : 02월 24일(월)부터 03월 14일(금) 17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구분	담당자 전화번호	신청방법
서울통합센터(서울·인천)	02-467-2514	
경기통합센터(경기·강원)	031-757-2546	
세종통합센터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)	044-903-0784	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
광주통합센터(광주·전북·전남·제주)	062-946-2174	www.seis.or.kr
대구통합센터(대구·경북)	053-431-9827	
부산통합센터(부산·울산·경남)	051-753-2506	

□ 제출서류 :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

	구분	제출서류	비고
1	필수	· 지원사업 신청서 1부	서식 01
2	필수	· 사업계획서 1부	서식 02
3	필수	·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	별도제출
4	필수	·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별도제출
5	필수	·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	별도제출
6	필수	·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1부	별도제출
7	필수	· 최근 2년간 재무제표(`23년, `24년 가결산) 각 1부 - `24년 설립법인은 `24년 재무제표만 제출	별도제출
8	필수	· 대면심사 자료 PPT(20장 이내) 및 PDF 자료 1부	별도제출

4. 심사방법 및 기준

□ 심사방법 : 서류검토 후 대면심사(PT)

□ 심사일정 : ^①서류검토 2025년 03월 17일(월)부터 03월 19일(수)까지, ^②대면심사 2025년 03월 19일(수)부터 03월 27일(목)까지*

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심사위원 : 7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

○ 선정방법 : 심사위원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**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**, 심사 점수 70점 미만 탈락

○ 결과발표 : 진흥원 홈페이지 및 통합센터별 유선 통보(03월 28일(금))*

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심사기준

심	사항목	배점	세부심사항목	비고
사업계획	사업지원의 필요성	10점	· 사업지원의 필요성, 사업지원 시 파급효과	정성평가
(50점)	사업계획의 적정성	40점	· 사업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, 구체성, 타당성 · 사업실적, 보유인력 등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	정성평가
기업성장 (40점)	기업의 성장가 능 성	20점	 최근 2년 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 연 평균매출액 10% 이상 증가(20점) 최근 2년간 연 평균매출액 5% 이상 증가(16점) 최근 2년간 연 평균매출액 0% 초과 증가(12점) 최근 2년간 연 평균매출액 0% 이하 감소(8점)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6개월 매출액 증가율 정성평가 	정량평가
	기업의 혁신성	20점	·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정, ·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노력 등	정성평가
확장기	나능성(10점)	10점	· 도약기 지원사업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	정성평가

5. 기타사항

- □ [®]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, [®]제출 서류는 반 환 불가, [®]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, [®] 향후 관련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사업수행 필수*
 - * 본 사업수행 기간 중 관련 사업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.

접수 완료 후 담당자가 기재 예정

2025년 (예비)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

기업명		
	성 명	
담당자 연락처	휴 대 폰	
L -7/1	메일주소	

2025년 [예비]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 신청서

	기 업 명									
	설립연월	사업자등	등록증 기	'준 작성	1	사업기	사 등록 번호			
	주 소									
	숙패이기					대.	표 전화			
7101	홈페이지					대.	표 메일			
기업 현황	버이취대	□ 주식회사			□ 협동	조합		□ 사회	회적협 동 조합	
	법인형태	□ 사단법인			□ 재딘	법인		□ 7 E	나 ()
	고용 현황		202	23년				202	24년	
	(유급근로자)	д						명		
	재정 현황	머	출액			영업	이익		당기순이역	익
	(2024년)			천원			천원			천원
		□ 인증 사회	적기업		□ 지역	형 예비	사회적기업	□ キネ	성형 예비 사회적	석기업
	이 기저 오청	□ 일자리 제공	공형		□ 사호	서비스	제공형	디지역	격사회공헌형	
인증	인·지정 유형	혼합형			미기티	형				
현황		인·지정	번호	제	- <u>-</u>	Ż.				
	C\/I	측정 연	<u>년</u> 도		2022년		2023կ	<u> </u>	2024	4년
	SVI	측정 결	결과							
	rU π 7L	Į	성명			휴대	전화		이메일	
인적	대표자									
사항	ことにとっし	성명			부서(직책)					
	담당자	휴대전화				C	이메일			
	사업명									
 신청		초	사업비			지원	 임근		자부담	
사업	예산	8,	10-1	 천원		*16	- 천원		*110	 천원
	지원 분야	□ 연구개발(F	R&D)		□ 생신	<u> </u>		□ 판률		
업계획	기업은 2025년 서를 제출하며, 등에 대해 이의기	기재된 내용	용 및 저	출 증						
							20)25년	월	일
							20	,_J <u>_</u>	2	П
				7	l업명	:				
				С	ᅢ표자	:				(인)
		한국	¦사회 [:]	적기	겁진홍	흥원경	장 귀중			

2025년 [예비]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

1. 기업 정보

기업명				
소셜 미션				
기업 연혁	•			
주요 사업내용 (제품 및 서비스)	•			
	연도	사업명	지원액(원)	지원처
지원사업 참여현황				
(최근 3년)				

II. 사업 요약

사업명	
핵심 목표	• • ※ 정량지표 중심으로 기재 - 예) 매출 증가율 및 영업 이익율, 신규 일자리 창출, 외부 투자 유치 금액, 공공조달 및 입찰 성과, 신규 거래처 및 고객 확보 수 등
사업 개요	• • • • • *
기대 효과	• • • • •

Ⅲ. 세부 사업계획서

1. 사업필요성 ※ 지원사업 신청배경, 지원의 필요성
•
_
•
_
2. 사업목표 ※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
_
_
3. 세부 추진내용 ※ 구체적으로 작성
4. 차별화 요소 및 특장점 ※ 제안 사업의 경쟁력과 확장성 등 차별화 요소 부각

5. 기대효과 ※ 기업 내부적 측면, 사회적 측면 기재													
C 7710174 W	. 0. 5.0.7. 7.11	1710 =	-1-11										
6. 추진일정 ※	: 철 난위로 구세	섹으로	· 기새										
구분		세부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									12월		
7. 참여인력 및	7. 참여인력 및 협력자원 ※ 세부 추진내용별 참여 인력 및 관계(협력)자원 기재												
구분	담당자 (협력자원)	소속 및 직책				관련 경력					비고		
예)상품개발	000				•								
예)포장 디자인	000기업				•								
					•								
					•								
					•								
ㅇ 햐ㅎ게히 w	8. 향후계획 ※ 지원 종료 후 활용방안 및 계획												
0. 8주계속 ※	: 시권 궁뇨 우 1	필공임	인 포	계획									

Ⅳ. 예산 사용 계획

구 분	총사업비 합계	사업비	자부담(20%)
741	원	원	원
계	100%	80%	20%

예산항목	세부사업	세목	산출내역	금액	비율
사업비	사업명	OOOOH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			•		
자부담	사업명	OOOOH	•		
			•		
			•		
총사업비 합계					

^{*} 예산 사용 계획 작성 시 공고문 2페이지 "지원불가항목" 및 "주의사항" 참고하여 작성

^{**} 부가가치세 편성 불가